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영

안 광 식
이화여대학교수 · 중재위원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언론 보도가 사건의 「실제적 사실」과 얼마나 같을 수 있을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신문이나 방송은 흥미로운 큰 사건이 생기면 의례 그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 과장하여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기에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를 피해자들이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언론사들이 또한 얼마나 잘 협조, 호응하느냐에 따라 중재제도의 효율성 여하가 좌우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재과정 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재신청 및 처리과정상의 문제점

- 1) 해당 중재부가 언론사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언론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언론기본법 시행령 제 41 조 4 항에 따라 중재가 불성립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언론사의 중재참여의식을 높일 수 없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중재위원회에 대한 공신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관계법조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 2) 언론사가 막후에서 신청인을 회유하는 사례가 많으며, 언론사는 정정 또는 PR 기사를 게재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중재신청을 취하케 하거나 신청인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않도록 종용하는 폐단이 있다.
- 3) 언론사가 신청인을 협박하거나 보복기사를 게재할 경우 해당 중재부에서는 신청인을 보호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 4) 현행법상 정부기관 · 정부투자기관 · 산하기관 및 단체는 법무부 장관이나 기관장 또는 단체장의 명의로 중재신청을 하거나 대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이에 따른 시간소요로 중재신청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 5) 언론사가 합의된 정정보도문을 임의로 개작할 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신청인은 또다시 소송을 해야 하며, 신청인이 이 사실을 목과할 경우 중재업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 6) 문제기사가 공표된 후 1 개월 내에 중재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기간상 너무 짧다. 월간지, 개간지는 발행일보다 늦게 배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7) 언론사가 정정보도문 게재 후 의도적인 보복기사를 게재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신청인은 중재신청을 후회하고 중재위원회 권위를 의심하기도 했다.
- 8) 언론사가 신청인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취하를 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 9) 정정보도 청구기간은(직접 언론사에 신청하는 경우) 14 일 이내지만 중재신청기간은 모든 매체가 1 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법체제상 모순이 있다.
- 10) 중재신청은 서울중재부에 편중되어 있고(약 85%), 지방중재부의 경우 15% 내외로 부진한 상태이다.

2. 시정권고업무상의 문제점.

시정권고업무는 중재위원회의 2 차적인 기능인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 1) 현행 법령에 시정권고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어서 언기법 제 50 조 8 항의 「중재위원회」를 「위원총회」라고 소극적 해석을 할 경우 언론침해에 대한 시정권고를 시의적절하게 할 수 없으며, 「심의절차」가 법조문에 없는 것도 법령상의 미비점이다.

2) 언론사의 정정보도 기피, 중재회의 불출석, 신청인에 대한 회유, 협박행위 등에 대하여 해당 중재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다.

3) 사무국에 자체심의를 위한 기구가 없는 것도 문제다.

3. 기사내용과 관계된 중재상 문제점.

최근 접수된 5개 중재사례들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즉 기사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기사제목에 대한 유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 가운데 기사내용의 진실여부에 대한 예리한 판단, 통신에서의 속보취급 과정의 확인, 지방신문에서의 통신기사 전재상황 확인, 경찰조서의 신빙성 여부, 기사취급시 일방적 취재원에 대한 의존 여부, 편향적 보도, 기사의 단어사용의 정확성 여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는 법령상의 미비, 언론사들의 비협조, 전근대적인 언론풍토, 언론인의 비전문성, 언론침해에 대한 수용자들의 무관심과 체념, 개인의 권익보호의식의 결여,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회적 요인들을 꼽을 수 있다.

언론이 중재제도를 외면하고 기피하는 것은, 곧 진실을 외면하고 개인의 권익 보호를 기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언론중재제도의 궁극적 이념과 존재가치는 인권존중과 국익추구의 일역을 감당하는 데 있으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진일보한 「사회적 선물」이 아닐 수 없다.

- 서울대학교 영문과, 미국 콜롬비아대 신문대학원

- 코리아 헤럴드 외신부장 역임

- 저술 : 「신문과 정부와의 갈등」 외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위원